

제269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0. 2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20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0 - 9
- 나. 제 출 자 : 강선영 의원 외 8명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2월 10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2월 17일

## 2. 제정이유

재능을 가진 구민의 재능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,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기본이념(안 제2조)
- 다. 재능기부에 대한 정의(안 제3조)
- 라. 재능기부 유형(안 제4조)
- 마. 구청장의 책무(안 제5조)
- 바. 재능기부 사업추진(안 제6조)
- 사.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(안 제7조)
- 아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, 제1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20. 2. 11. ~ 2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-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·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, 법인 및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나. 주요 내용

1) 재능기부의 유형(안 제4조)

-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의 재능기부의 유형 정의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5조)

- 구청장의 책무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및 권장지원

3) 재능기부사업 추진(안 제6조)

-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
- 체계적인 재능기부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 운영가능 내용 규정 및 경비지원

#### 4) 포상(안 제7조)

- 재능기부자(개인, 법인, 단체)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

#### 다. 종합 의견

-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·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, 법인, 단체가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되며
- 구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재능의 환원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**□ 지방자치법**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 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**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